

계약사무처리규칙

제정	2009. 06. 24.
개정	2009. 12. 08.
개정	2010. 03. 12.
개정	2010. 07. 14.
개정	2010. 09. 28.
개정	2011. 03. 15.
개정	2011. 08. 31.
개정	2012. 04. 17.
개정	2013. 02. 15.
개정	2013. 03. 07.
개정	2013. 03. 27.
개정	2013. 12. 31.
개정	2014. 02. 13.
개정	2014. 10. 06.
개정	2014. 10. 29.
개정	2015. 04. 27.
개정	2015. 11. 10.
개정	2015. 12. 31.
개정	2016. 02. 12.
개정	2016. 03. 14.
개정	2017. 05. 23.
개정	2017. 06. 08.
개정	2018. 02. 09.
개정	2018. 08. 06.
개정	2018. 12. 28.
개정	2019. 07. 31.
개정	2020. 08. 11.
개정	2021. 01. 19.
개정	2021. 12. 28.
전부개정	2022. 05. 02.
개정	2023. 01. 13.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각종 계약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2.>

제2조(적용범위)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계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획재정부령, 이하 “계약사무규칙”이라 한다)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이하 “계약예규”라 한다), 「회계규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개정 2010.9.28.> <개정 2022.5.2.>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전부개정 2022.5.2.>

- ① “계약담당자”라 함은 직제에 의하여 계약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이하 “계약담당부서”라 한다)의 장 및 제4조제1항에 따라 계약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다만, 업무수행 상 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부서의 부서장이 아닌 직원이 계약담당자가 될 수 있다.
- ② “의뢰부서장”이라 함은 계약담당자에게 계약을 의뢰하는 부서(이하 “의뢰부서”라 한다)의 장을 말한다.
- ③ “회계담당부서”라 함은 직제에 의하여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 ④ “계약상대자”라 함은 진흥원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 ⑤ “추정가격”이라 함은 물품·공사·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가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한다.)으로 한다.
 1.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
 2.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추정단가에 조달예정수량을 곱한 금액

3. 개별적인 조달요구가 복수로 이루어지거나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중에서 선택한 금액
 - 가. 해당 계약의 직전 회계연도 또는 직전 12개월 동안 체결된 유사한 계약의 총액을 대상으로 직후 12개월 동안의 수량 및 금액의 예상변동분을 고려하여 조정한 금액
 - 나. 동일 회계연도 또는 직후 12월 동안에 계약할 금액의 총액 어느 하나 중에서 선택한 금액
 4. 물품 또는 용역의 리스·임차·할부구매계약 및 총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의한 금액
 - 가. 계약기간이 정하여진 계약의 경우에는 총계약기간에 대하여 추정한 금액
 - 나. 계약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계약의 경우에는 1월분의 추정지급액에 48을 곱한 금액
 5. 조달하고자 하는 대상에 선택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최대한 조달가능한 금액
- ⑥ “예정가격”이라 함은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제10조에 따라 작성된 가격(「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⑦ “전자거래”라 함은 재화나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의 거래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다.
 - ⑧ “온라인 쇼핑몰”이라 함은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 ⑨ “고시금액”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말한다.
 - ⑩ “전문가”라 함은 제5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전문가 인력 시스템에 등록한 자 또는 내외부에서 추천된 산·학·연·관 등의 관계자를 말한다.
 - ⑪ “평가위원”이라 함은 전문가 중에서 심사평가위원검증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평가위원 Pool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⑫ “추정금액“이라 함은 공사에 있어서 제5항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로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제4조(계약업무의 분담) ① 진흥원은 계약담당부서 이외 다른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분담하여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에 계약업무의 일부를 위임 할 수 있다. 계약업무를 위임받은 해당 부서장은 위임전결 기준에 의거 계약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8.> <개정 2013.3.27.> <개정 2015.12.31.> <개정 2019.7.31.> <개정 2022.5.2>

② 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자의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는 해당 부서장은 그 분담업무의 범위 내에서는 계약담당자와 같은 권한과 책임을 진다. <개정 2010.9.28.> <개정 2015.12.31.> <개정 2019.7.31.> <개정 2022.5.2.>

제 2 장 계약체결 절차 및 의뢰

제5조(계약처리절차) 진흥원의 계약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계약계획 품의 : 의뢰부서 <개정 2010.9.28.> <개정 2022.5.2>
2. <삭제 2022.5.2>
3. 계약체결 의뢰 : 의뢰부서 <개정 2010.9.28.> <개정 2013.3.27.> <개정 2022.5.2>
(제6조제3항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4. 계약 계획품의(계약방법, 예정가격 설정) : 계약담당부서 <개정 2022.5.2>
5. 제안서 접수 및 산출내역서·견적서 검토 : 의뢰부서, 계약담당부서
<개정 2014.2.13.> <개정 2016.2.12.> <개정 2022.5.2>
- 5의2. 제안서 검토, 평가위원 선정 및 기술 평가 : 의뢰부서, 평가담당부서
<개정 2010.9.28.> <개정 2018.2.9.> <개정 2018.8.6.> <개정 2022.5.2>
6. 가격평가 등을 통해 계약예정자 통보 : 계약담당부서 <개정 2016.2.12.>
- 6의2.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최종 선정 결과보고 및 통보 : 의뢰부서, 계약담당부서, 평가담당부서 <신설 2016.2.12.> <개정 2018.2.9.> <개정 2022.5.2>
- 6의3. 기술협상 및 계약체결(계약 제반서류 포함) 의뢰 : 의뢰부서 <신설

2019.7.31.>

7. 계약체결 : 계약담당부서 <개정 2022.5.2>
8. 계약 집행의 검수 : 의뢰부서 <개정 2010.9.28.> <개정 2022.5.2>
9. <삭제 2010.9.28.>
10. 대금지급 요청 : 의뢰부서(검수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포함한 결의서 작성) <개정 2010.9.28.>
11. 대금의 지급 : 회계담당부서 <개정 2010.9.28.>

제6조(계약체결의 의뢰) ① 용역 또는 공사의 발주, 동산 또는 부동산의 임차 및 물품의 조달 등을 위하여 계약체결이 필요한 의뢰부서장은 계약담당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 계약체결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8.> <개정 2022.5.2>

1. 품목 또는 계약명 및 계약범위
2. 당해 계약의 필요성 및 효과 <개정 2022.5.2>
3. 납품기한 또는 계약기간
4. 추정가격 또는 계약금액 및 예산확인. 다만, 추정가격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등 제세공과금 기타 예상되는 비용을 포함시킨 금액 등 그 산정내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8.> <개정 2022.5.2>
5. 진흥원내 보유 유무 및 공동 활용의 가능성 여부
6. 긴급성 및 보안유지의 필요 여부
7. 선금의 지급여부 및 지급범위
8. 전산장비(단순 전산소모품류는 제외한다)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전산담당부서에 의뢰하여 구매제품의 수량 및 사양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의견을 받아 첨부하여야 한다.

② <개정 2010.9.28.> <삭제 2022.5.2>

③ 계약담당자는 필요한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계약체결 의뢰를 받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할 것을 의뢰부서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10.9.28.> <개정 2022.5.2>

1. 시방서·도면·규격서·사양서 등 계약목적물의 성능, 제원, 재질 등을 기재한 서류 <개정 2013.3.27.> <개정 2022.5.2>
2. 제안요청서 또는 과업지시서 <개정 2010.9.28.>

3. 기타 계약체결과 관련된 서류 등 <개정 2013.3.27.>

④ <삭제 2013.3.27.>

⑤ <개정 2010.9.28.> <삭제 2022.5.2.>

⑥ 의뢰부서장은 계약체결 의뢰서의 작성에 필요한 계약목적물의 규격 작성 또는 추정금액의 산출 등을 위하여 직접 조사할 경우에는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9.28.> <개정 2022.5.2.>

제7조(계약체결 의뢰접수) ① 제6조에 따라 계약체결 의뢰를 받은 경우, 계약담당자는 그 기재사항 및 관련 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매 또는 계약체결 의뢰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구매 또는 계약체결 의뢰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뢰부서장과 협의하여 계약 목적물의 사양·수량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9.28.> <개정 2022.5.2.>

② <삭제 2022.5.2.>

③ 계약체결 의뢰서를 제출 받은 계약담당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적기에 구매 또는 계약체결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사실을 의뢰부서장에게 통보하여 계약체결의 취소, 연기 또는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8.> <개정 2022.5.2.>

제7조의2(구매규격사전공개) ① 계약담당자는 물품 및 용역을 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다음에 정하는 구매규격을 사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연도에 1회 이상 규격을 사전에 공개한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는 사전공개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물품제조·구매계약 : 규격서, 사양서, 시방서 등 계약목적물의 성능, 제원, 재질 등을 기재한 서류,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집행할 경우 실적평가 여부와 그 기준
2. 용역계약 :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과업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및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집행할 경우 실적평가 여부와 그 기준

② 구매규격사전공개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며, 공개기간은 공개일로부터 5일간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3일간 구매규격사전공개를 할 수 있다.

③ 의뢰부서장은 구매규격사전공개와 관련한 의견이 제기될 경우 이를 수요목적 범위내에서 적극 수렴되도록 검토한 후 구매규격을 확정한다.

[본조신설 2022.5.2.]

제8조(동일품목의 반복구매 등) ① 빈번하게 구매요구가 있는 동일품목의 경우에는 원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제6조 및 제7조에도 불구하고 의뢰부서장으로 하여금 직접 구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9.28.>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직접구매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구매품목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품목·단가·계약기간·계약업체 등 구매에 필요한 사항을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8.>

<개정 2022.5.2.>

③ 의뢰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직접구매 시 단가계약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와 같은 책임과 의무를 진다. <개정 2010.9.28.> <개정 2022.5.2.>

④ 단가계약 기간은 6월 이상 1년 이내로 하며, 계약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2.5.2>

제9조(계약업무의 분담 범위) ① 제4조에 의하여 계약업무의 일부를 담당하는 경우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5.2>

1. 전기, 통신(전화, 인터넷, 우편), 가스 등의 공급계약 <개정 2019.7.31.>
2. 계약의 성격상 반복적인 계약으로 사무용품 구매, 사무기기 및 비품 임차 등의 계약 <개정 2010.9.28.> <개정 2019.7.31.>
3. 민간경상이전 위탁사업 <개정 2022.5.2>
4. 매체광고 및 매체공고
5. 자문 및 수입 계약(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노무사, 법무사 등) <개정 2019.7.31.>
6. 부동산 임대차 계약
7. 계약금액이 확정된 계약(대관료 등)
8. 인력파견 계약

9. 차량 임대차 및 단기간의 장비 임대차 계약

10.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의 계약

<개정 2010.9.28.> <개정 2013.3.27.> <개정 2016.3.14.> <개정 2019.7.31.> <개정 2022.5.2>

11. 콘텐츠도서관 자료 구입

12. 교육사업 추진 시 교육교재 복사·제본 및 구입

13. 기타 계약의 목적, 성질에 비추어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09.12.08.> <개정 2022.5.2>

14. 외국사업자 또는 개인과 구매·계약체결을 하는 경우 <신설 2013.3.27.>

② 인쇄물(각종책서, 보고서, 교육교재 등), 안내홍보물(기념품, 현수막 등), 각종 복사용지, 컴퓨터 및 컴퓨터용품(재생토너, 카트리지 등), 사무용품(가구 등 집기류 포함) 등 물품의 구매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매하여야 하며(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한 전자거래를 포함한다) 다만, 그 이외의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위임전결 기준과 관계없이 원장의 직접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8.31.> <개정 2013.3.27.> <개정 2016.3.14.> <개정 2019.7.31.> <개정 2022.5.2>

1. <삭제 2016.3.14.>

2.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제품

3.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

4.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색제품

5. 「중소기업제품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된 기술개발 제품 <개정 2016.3.14.> <개정 2019.7.31.>

6.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생산품

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8.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한 자활용사촌의 생산품 <개정 2009.12.8.> <개정 2010.9.28.> <개정 2019.7.31.>

9.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생산품 <신설 2016.3.14.> <개정 2019.7.31.>

10.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 생산품

<신설 2016.3.14.> <개정 2019.7.31.>

③ <삭제 2009.12.8.>

④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통해 구매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신설 2016.3.14.> <개정 2022.5.2>

⑤ 소프트웨어 등 품질인증 제품의 구매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으로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신설 2019.7.31.>

제 3 장 입찰 및 낙찰

제10조(예정가격의 작성 및 결정) ① 계약담당자는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해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 협상장소 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제22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바목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2.13.> <개정 2022.5.2.>

②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8.> <전부개정 2022.5.2.>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 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
2.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등의 특수한 물품·공사·용역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한다.
3.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공사·용역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③ <개정 2010.9.28.> <삭제 2022.5.2.>

④ <개정 2010.9.28.> <삭제 2022.5.2.>

⑤ <개정 2010.9.28.> <삭제 2022.5.2.>

⑥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유출이 우려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복수예비가격 방식에 의해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44조의3에 따른다. <신설 2022.5.2.>

제11조(계약의 방법)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5.2.>

② 제1항에 따른 경쟁은 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입찰을 하려면 미리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5.2.>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경우, 국가계약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거나, 시공능력, 기술능력, 실적, 재무상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에 필요한 요건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2.5.2.>

④ 제3항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공사의 현장 또는 물품의 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등록된 업체로 한정할 수 있다. <신설 2022.5.2.>

1.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전문공사는 제외한다): 고시금액 미만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와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 국가계약법 제24조제2항제1호나목에서 정한 금액 미만

2.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및 그 밖의 경우 : 고시금액 미만

제11조의2(30억원 이상 보조사업 시설공사) ①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중앙관서의 예산서상의 세부사업을 말한다.) 중 추정가격 30억원 이

상의 공사를 수행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7.6.8.>

1.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2. 공사계약 체결, 단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계약체결에 한한다.
 3.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설계적정성 검토, 계약체결, 설계변경 타당성 검토를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7.6.8.>

1. 해외 공사, 재해 또는 긴급 복구 공사, 기술의 특수성을 요구하는 공사, 문화재와 연계된 문화재 관련공사
2.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시설분야 전문인력이 관리·감독(기획, 설계 등)하는 사업, 단 공사계약 체결은 제1항에 따른다.
3. 그 밖에 조속한 사업추진 등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입찰참가신청) ① 계약담당자가 경쟁입찰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5.2.>

1.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사본 <개정 2022.5.2.>
 3.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개정 2013.3.7.> <개정 2022.5.2.>
 4. 기타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서류 <개정 2022.5.2.>
-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5.2.>
- ③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에 의하여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5.2.>
- ④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입찰참가신청 서류에 대하여 필

요한 경우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22.5.2.>

⑤ 제1항의 입찰참가신청 서류의 접수 마감일은 공고내용의 마감일에 따른다. <이동 2022.5.2.>

제13조(2단계 경쟁 등의 입찰) ① 계약담당자는 물품의 제조, 구매 또는 용역계약(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 호의 계약을 제외한다)에 있어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5.2.>

② 제1항의 경우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특성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격과 가격 또는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8.> <개정 2022.5.2.>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입찰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 전에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8.> <개정 2022.5.2.>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5.2.>

제14조(입찰공고의 방법, 시기, 내용 등) ① 계약담당자는 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하고 진흥원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거나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10.9.28.> <개정 2019.7.31.> <개정 2022.5.2.>

② 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행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0.9.28.> <개정 2019.7.31.> <전부개정 2022.5.2.>

1. 제23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2. 진흥원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③ 제22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0.9.28.> <개정 2019.7.31.> <개정 2022.5.2.>

④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제15조 제2항에 따른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에 심사하려는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8.> <개정 2013.3.27.> <개정 2019.7.31.> <개정 2022.5.2.>

⑤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5.2.>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

⑥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22.5.2.>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입찰 또는 개찰의 일시와 장소
3.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의 장소·일시 및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의2. 입찰참가등록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입찰관련서류에 관한 사항

5. 입찰보증금과 귀속에 관한 사항

6. 낙찰자 결정방법

7.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

8. 계약하고자 하는 조건을 공시하는 장소

9.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10.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장소 및 교부비용

11.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등

12. 제16조제1항에 따라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 및 방법

12의2. 제16조제2항에 따라 입찰서를 우편으로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입찰서를 송부할 주소

13. 제22조의4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과 공동계약의 이행방식

14. 입찰 관련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15.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비율

16.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제안요청설명 및 현장설명)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5.2.>

② 계약담당자는 공사입찰을 하는 경우 그 공사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실제 공사현장에서 입찰참가자의 적정한 시공을 위한 현장설명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2.5.2.>

③ 제2항에 따른 현장설명은 공사의 규모에 따라 해당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한 전에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제14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0.9.28.> <전부개정 2022.5.2.>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33일

제16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방법) ①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22.5.2.>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등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장소와 일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22.5.2.>

③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부개정 2022.5.2.>

④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 개시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당해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22.5.2.>

⑤ 계약담당자는 입찰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해입찰서에 확인인을 날인하고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22.5.2.>

제17조(입찰보증금)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자로 하여금 입찰신청 마감일까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단가에 대해 실시하는 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 금액.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 시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 체크로 납부를 대신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7.31.> <개정 2022.5.2.>

② 입찰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8.>

1.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및 「은행법」에 의한 외국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개정 2010.9.28.>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증권 <개정 2010.9.28.>
3.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개정 2010.9.28.>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개정 2010.9.28.> <전부개정 2022.5.2.>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나.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다.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사. 「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

아.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자.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한정한다)

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

카. 「골재채취법」에 따른 공제조합

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파.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하. 「방위사업법」 제43조에 따라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너.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

- 러.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공제조합
 - 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 버.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0조의2에 따른 콘텐츠공제조합
 - 서. 「폐기물관리법」 제41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
 - 어.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
 - 저.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
5.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 및 외국금융기관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개정 2010.9.28.> <개정 2022.5.2.>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신설 2010.9.28.>
- ③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9.28.> <개정 2019.7.31.> <개정 2022.5.2.>
1. 출자회사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은 자로 하여금 제18조제1항에 따른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해 그 지급을 약속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0.9.28.> <개정 2022.5.2.>

제18조(입찰보증금의 귀속) ①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진흥원에 귀속시켜야 한다.

<개정 2010.9.28.> <개정 2013.3.27.> <개정 2022.5.2.>

② 계약담당자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제출한 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8.> <개정 2013.3.27.> <개정 2022.5.2.>

③ 계약담당자는 제17조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가 면제된 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고지하고,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2.5.2.>

제19조(입찰무효)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한다. <전부개정 2022.5.2.>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1의2. 시행령 제76조제5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내에 있는 대표자를 통한 입찰

2.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제6항에 따른 입찰로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입찰서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

6.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가.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나.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7.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8.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공동계약의 방법에 위반한 입찰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외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입찰유의서에 위반된 입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2조의4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입찰자의 대표자 외의 구성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 대해서만 입찰을 무효로 한다. <전부개정 2022.5.2.>

- 제20조(개찰)** ①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서의 접수마감을 선언하고, 입찰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개찰하여야 한다. <개정 2022.5.2.>
- ② 제16조1항에 따라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개찰 및 낙찰선언을 한다. <전부개정 2022.5.2.>
- ③ <삭제 2022.5.2.>

- 제21조(낙찰자의 결정)** ①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낙찰선언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이행능력 및 일자리창출 실적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 절차를 거친 후 낙찰선언을 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22.5.2.>
- ② 수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상으로서 최고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전부개정 2022.5.2.>
- ③ 지출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일자리창출 실적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공사 또는 용역입찰에 대해서는 낙찰자를 달리 결정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22.5.2.>
-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제13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전부개정 2022.5.2.>
- ⑤ 제3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는 해당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하도급관리 계획·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정도, 과거공사의 품질정도 및 입찰가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적격여부를 심

사하며, 그 심사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공사 또는 물품등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장이 계약담당자와의 협의를 거쳐 본문에 따른 적격심사기준과 달리 직접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22.5.2.>

⑥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22.5.2.>

제22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계약담당자는 물품·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기타 보안목적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0.9.28.> <개정 2022.5.2.>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8.> <개정 2022.5.2.>

1.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예산
2. 해당 계약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사실
3. 제안요청서의 요청기한 및 요청에 필요한 서류
4. 제5항에 따라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화상 방식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할 경우 정보처리장치에 대한 접속 방법)·일시에 관한 사항
5.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6. 제안서의 제출기간
7. 제안서의 내용
8. 제안서의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9. 기술능력평가를 실시하는지 여부와 평가점수 부여기준
10. 가격의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는지 여부와 적정성 평가대상의 기준이 되는 금액
11. 제안서 평가시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 그 장소(화상 평가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평가의 경우 해당 정보처리장치에 대한

접속방법)·일시에 관한 사항

12. 기타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계약담당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8.> <개정 2022.5.2.>
- ④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함으로써 제3항에 따른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0.9.28.> <개정 2022.5.2.>
-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5.2.>
- ⑥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사업수행계획, 재무상태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세부 기준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그 기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2.5.2.>
- ⑦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2.5.2.>
- ⑧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 체결 시에도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여야 한다. <신설 2022.5.2.>

제22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① 계약책임자 등은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지식기반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 1.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조제2호의 콘텐츠산업
-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문화산업
-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에 있어서는 고난도 또는 고기술을 요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2.5.2.>
- 4.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개정 2022.5.2.>

5.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정보화에 관한 사업

<개정 2022.5.2.>

6.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에 관한 사업

<개정 2022.5.2.>

7. 그 밖에 원장이 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2.5.2.>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근거하여 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3.> <개정 2022.5.2.>

- 제22조의3(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① 계약담당자는 외국에서의 행사 개최 등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2.5.2.>
-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5.2.>
- ③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제10조 및 제2항에 의한 기준 등에 따라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신설 2010.9.28.> <개정 2022.5.2.>

- 제22조의4(공동계약)**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제조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상대자를 둘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 모두가 계약서에 기명하고 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 ③ 계약담당자는 경쟁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여야 한다.
- ④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시 제3항에 의하여 동일현장에 2인 이상의 수급인을 투입하기 곤란하거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등 계약의 목적·성질상 공동계약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5.2.]

제23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않으며,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개정 2014.2.13.> <개정 2022.5.2.>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22.5.2.>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신설 2022.5.2.>

제24조(제한경쟁입찰) ①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9.28.>

<개정 2013.3.27.> <전부개정 2022.5.2.>

1.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의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시공능력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2.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 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3.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
4.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어 다음 각 목의 품질 인증 등을 받은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그 품질 인증 등을 받은 물품인지 여부
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물품
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다른 품질 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5.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
6. 추정가격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공고한 물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 제1호에 따른 제한경쟁입찰 방법에 따라 물품 제조·구매 계약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른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9. 원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쟁참가자의 재무상태
10.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
 - 가.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
 - 나.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11.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자가 생산한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지 여부
 - 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3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입주(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정기간만 해당한다)한 자
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자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8.> <개정 2022.5.2.>

③ 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등록의 신청을 받은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 적격자를 선정하여 그 결과를 당해 적격자에게 통지하고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8.> <개정 2022.5.2.>

제25조(지명경쟁입찰) ①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9.28.> <개정 2013.3.27.> <전부개정 2022.5.2.>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전문공사를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3억원 이하인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를 하거나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물품을 제조할 경우
3.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 또는 매입할 경우
4. 예정임대·임차료의 총액이 5천만원 이하인 물건을 임대·임차할 경우
5. 공사나 제조의 도급, 재산의 매각 또는 물건의 임대·임차외의 계약으로서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6.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7.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9.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중소기업부 장관이 지정·공고한 물품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할 경우
1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 제2호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의 요청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천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해당 물품 등을 납품할 수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말한다)으로 하여금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용역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지명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2인 이상의 입찰참가신청이 있어야 한다. 다만, 지명대상자가 5인 미만인 때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8.>
 -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라 입찰대상자를 지명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통지하여 입찰참가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8.> <개정 2022.5.2.>

제26조(수의계약) ①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부개정 2022.5.2.>

1.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해외사무소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3.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같은 조 제1항제3호사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목의 고시 금액에도 불구하고 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5.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2.5.2.>
1. 진흥원의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과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2. 진흥원의 퇴직자와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3. 진흥원의 퇴직자 모임·단체 또는 그 퇴직자 모임·단체의 회원사나 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③ 계약담당자는 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으로부터 임원의 명단이 기재된 문서를 제출받아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해당 법인에 허위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제39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5.2.>

④ 제2항과 제3항은 제1항제1호·제3호[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가목(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으로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4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5.2.>

⑤ 계약담당자가 제4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내용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원장은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지체 없이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5.2.>

제26조의2(계약심의위원회) ① 계약담당부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계약 관련 주요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수의계약의 경우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원장의 승인을 득한 것은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9.28.> <개정 2014.2.13.> <개정 2022.5.2.> <개정 2023.00.00.>

1.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2.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여부 등에 관한 사항
3. 수의계약 사유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4.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부원장, 경영본부장, 감사실장, 해당사업 이외 본부장(단장) 2인 등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원장, 간사는 계약담당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10.9.28.> <개정 2011.3.15.> <개정 2012.5.3.> <개정 2014.2.13.> <개정 2015.4.27.> <개정 2016.2.12.> <개정 2018.8.6.> <개정 2022.5.2.>

③ 해당사업 본부장(단장) 및 부서장 등은 심의위원회에 배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4.2.13.> <개정 2022.5.2.>

[제목개정 2023.1.13.]

제26조의3(심의위원회 개최 자료제출 등) 의뢰부서장은 계약담당부서로부터 심의위원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을 첨부하여 심의위원회 개최 관련 자료를 계약담당부서에 협조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3.> <개정 2022.5.2.> <개정 2023.1.13.>

제26조의4(심의위원회의 개최결과 보고) 계약담당부서는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3.> <개정 2022.5.2.>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3.3.27.> <개정 2022.5.2.>

1.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22.5.2.>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23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5.2.>

제28조(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의 수의계약) ①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다만,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10.9.28.> <개정 2022.5.2.>
② 제1항의 규정은 낙찰자가 계약체결 후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이행에 착수한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2.5.2.>

제29조(견적에 의한 가격 결정 등) ① 계약담당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22.5.2.> <개정 2023.1.13.>

1. 제27조, 제28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나목, 같은 항 제2호, 같은 항 제5호마목·사목·아목에 따른 계약의 경우
2. 추정가격이 1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경우
3.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과 체결하는 경우
4.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나)·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② <삭제 2016.3.14.>

③ <신설 2019.7.31.> <삭제 2022.5.2.>

④ <신설 2017.5.23.> <개정 2019.7.31.> <삭제 2022.5.2.>

⑤ 계약담당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협동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전자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3.1.13.>

⑥ 계약담당자는 제5항 본문에 따라 전자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그 견적서의 제출에 관한 사항은 전자시스템을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해야 한다. <신설 2023.1.13.>

제 4 장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30조(계약서의 작성)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22.5.2.>

1. 계약명
2. 계약상대자
3.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4. 계약방법 및 계약방법 결정근거
5. 주요 계약조건 기타 필요사항
6. 입찰의 경우 별지 4호 서식에 의한 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
7. 계약의 경우 별지 5호 서식에 의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개정 2014.2.13.>
8.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에 관한 동의서 <신설 2019.7.31.>

② <개정 2019.7.31.> <삭제 2022.5.2.>

③ 외국법인 또는 외국인과 계약체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받아야 한다. <신설 2013.3.27.> <개정 2022.5.2.>

1. 국문 및 영문 또는 해당 국가의 언어로 작성된 계약서
2. 계약당사자의 이력·경력·등록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3. 사업수행계획서
4. 기타 관계법령에서 요하는 사항 <개정 2014.2.13.>

제31조(계약서작성의 생략) ①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개정 2022.5.2.>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외국산제품 등의 구매 금액이 미화 2만불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개정 2022.5.2.>

3.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개정 2010.9.28.> <개정 2013.3.27.>
4. 전기·가스·수도·통신의 공급 및 보험계약 등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 한 경우 <개정 2014.2.13.>
5. 경매에 부치는 경우
6.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7. 해외 제작자 및 공급자와의 직거래 등에서 계약서 작성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국내 대리점이 별도계약을 수락하지 아니 하는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으로부터 계약이행확약서·협정서·승낙사항·인보이스(이는 해외업체 및 여행사에 한정한다.) 등 계약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8.> <개정 2013.3.27.> <개정 2022.5.2.>

제32조(계약체결의 예외) <삭제 2022.5.2.>

제33조(계약보증금) ① 계약담당자는 진흥원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은 100분의 1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9.28.> <개정 2022.5.2.>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22.5.2.>

1. 제17조제3항 각 호의 경우
2. 계약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③ 계약보증금의 납부에 관하여는 제17조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7.>

④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17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9.28.> <개정 2013.3.27.> <개정 2022.5.2.>

⑤ <삭제 2013.3.27.>

⑥ 계약보증금의 감면에 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2조에 따른다. <신설 2022.5.2.>

제33조의2(계약보증금의 귀속)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3조의 규칙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진흥원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3.3.27.> <개정 2022.5.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진흥원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처리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진흥원에 귀속시켜야 하는 계약보증금은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3.3.27.> <개정 2022.5.2.>

③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칙은 계약보증금의 귀속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13.3.27.> <개정 2022.5.2.>

제34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공사 등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당해 공사 등이 준공(완료)검사 후 그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 등은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9.28.> <개정 2011.8.31.> <개정 2013.3.27.> <개정 2022.5.2.>

② 공사의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에 관하여는 제17조 제2항 · 제4항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3.27.> <개정 2022.5.2.>

③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사의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하자보수보증금 납부각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신설 2022.5.2.>

④ 용역 및 물품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율은 「물품

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8조 및 제19조 및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2.5.2.>

⑤ 제4항의 경우 계약담당자는 성질상 하자보수가 불필요하거나 하자보수 책임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과 하자보수 보증금율을 달리 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2.5.2.>

제35조(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의 변경 또는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5.2.>

②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0.9.28.> <개정 2022.5.2.>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의 단가(이하 “예정가격단가”라 한다)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진흥원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개정 2010.9.28.> <삭제 2018.12.28.>

④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등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등에 의하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2.5.2.>

제35조의2(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 · 제조계약 · 용역계약 또는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 제5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9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신설 2018.12.28.> <개정 2022.5.2.>

1.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한다)을 기준일로 하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 제1항에 따라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
2.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제4항에 따라 산출된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천재 · 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당해 조정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8.12.28.> <개정 2022.5.2.>

③ 계약담당자는 환율변동을 원인으로 제 1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성립된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2.5.2.>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책임자는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예정가격 작성 이후 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 노무비에 한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8.12.28.> <이동 2022.5.2.>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책임자 등은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 신청이 있을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1.12.28.> <이동 2022.5.2.>

⑥ 본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2018.12.28.> <이동 2021.12.28.> <전부개정 2022.5.2.>

제36조(지체상금)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지체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무에 의하여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8.6.> <개정 2022.5.2.>

1. 물품의 제조·구매 : 1000분의 0.75
2. 공사 : 1000분의 0.5
3. 물품의 수리·가공·대여, 용역 및 기타 : 1000분의 1.25
4. 운송 및 보관 : 1000분의 2.5

② 제1항의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물품 또는 용역등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신설 2022.5.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납부할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신설 2022.5.2.>

제37조(계약변경) ①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의뢰부서장은 변경 계약 절차에 따라 결재를 득하여 계약담당자에게 계약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와 합의 후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0.9.28.> <개정 2019.7.31.> <개정 2022.5.2.>

② 의뢰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변경을 요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2.5.2.>

1. 변경계약서

2. 변경사항을 반영한 사업수행계획서 및 산출내역서

3. 그 밖에 기타 필요한 서류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 납부 또는 반환(선금 포함)하거나 보증서를 교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을 증감하여 변경한 이후에도 기존 보증서가 유효하고 계약상대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보증서를 교체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2.5.2.>

제37조의2(보증보험증권 등의 보증기간의 연장)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체결일을 연기하거나 계약의 이행기간 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기간 내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기간으로 하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55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보증보험증권 등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3.3.27.>

<개정 2022.5.2.>

제38조(계약의 해제·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제33조의2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진흥원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3.> <개정 2022.5.2.>

② 제36조에 따른 지체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제33조제1항의 계약보증금상당액(면제된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에 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개정 2010.9.28.> <개정 2022.5.2.>

1.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3조의2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고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계약 이행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36조제3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 납부하게 하고

계약을 유지한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의 추가납부에 관하여는 제33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38조의2(하도급거래 관리 등)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원도급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금액 1억원 이상 소프트웨어사업, 시설공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용역위탁 계약 등 부득이 하도급이 필요한 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의뢰부서장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7.31.> <개정 2022.5.2.>

1. 계약명
2. 원도급액
3. 하도급 부분 및 내역
4. 하도급 금액 및 기간
5. 하도급 사유(하수급자 및 기타 하도급 조건 변경 시에는 변경하는 사유)
6. 하도급 계약서 사본

② 의뢰부서장 및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 10억원 이상 소프트웨어사업, 시설공사, 하도급법에서 정한 용역위탁 계약의 하도급 거래금액이 계약금액의 30%이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하도급거래의 적정성을 심의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는 계약부서장, 의뢰부서장 및 관련 전문가 등 3인 이상으로 심의반을 구성 운영하며, 심의반장은 계약부서장, 간사는 사업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4.2.13.> <개정 2019.7.31.> <개정 2022.5.2.>

③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법 제14조에 의거 하도급 대금을 직접 청구할 경우, 계약책임자 등은 하도급 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5.2.>

④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에 대한 실적증명을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이행 사실을 확인한 후 실적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11.8.31.> <개정 2022.5.2.>

⑤ 제1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전기공사업법」 제14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5.2.>

제3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① 계약담당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의 대리인·지배인 기타 사용인을 포함한다)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장은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의 세부기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다. <개정 2013.3.27.> <전부개정 2022.5.2.>

1.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3.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진흥원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진흥원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
4.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 과정에서 진흥원에 손해를 끼친 자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5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7.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준 자
8.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
 - 가. 입찰·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
 -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 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 다.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삭제 2013.3.27.>

③ <신설 2014.10.29.> <삭제 2022.5.2.>

④ <신설 2014.10.29.> <삭제 2022.5.2.>

제39조의2(청렴계약) ① 계약담당자는 구매·계약에서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접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을 주거나 받지 아니할 것을 약정하게 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의 계약(이하 “청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10.9.28.> <개정 2022.5.2.>

② 계약담당자는 청렴계약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여야 한다. 다만, 금품·향응 제공 등 부정행위의 경중, 해당 계약의 이행 정도, 계약이행 중단으로 인한 국가의 손실 규모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3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계약을 계속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5.2.>

③ 제1항의 청렴계약이행서약을 위반하여 제39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서 제재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에도 불구하고 제재기간을 경감할 수 없다. <신설 2010.9.28.> <개정 2022.5.2.>

제39조의3(비밀유지계약의 체결) ① 계약상대자가 진흥원에 비밀정보(계약상대자가 비밀로 관리하는 기술자료, 영업자료 등을 의미한다.)를 제공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진흥원은 비밀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비밀유지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비밀유지계약”에는 비밀정보의 제공목적 및 범위, 비밀유지의무, 계약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28.]

제39조의4(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 임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의 보호

를 위하여 계약 수행에 따라 발생한 “기술자료” 를 제3의 기관(이하 “임치기관” 이라 한다)에 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술자료” 란 계약 수행에 따라 발생한 일체의 자료(지식 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 중 계약상대자 또는 진흥원이 계약내용의 특성에 따른 중요도를 감안하여 임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료를 의미한다.

③ 제1항의 “임치기관” 은 「저작권법시행령」 제39조의2 및 「대중소 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에 의한 기관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정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 진흥원이 합의하여 다른 기관에 임치할 수 있다.

④ 임치수수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진흥원이 계약상대자의 임치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28.]

제 5 장 감독 및 검사

제40조(계약이행의 감독 및 검사)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후 적정한 계약 이행 확보 및 그 이행완료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관련서류의 사본을 의뢰부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8.> <개정 2019.7.31.> <개정 2022.5.2.>

② 의뢰부서장은 공사, 제조,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의하여 직접 감독하며 감독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8.> <개정 2022.5.2.>

③ 의뢰부서장은 계약이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제작·조립·시공·인쇄 등 계약과정의 검사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행완료 전에 중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7.> <개정 2022.5.2.>

④ <삭제 2016.3.14.>

⑤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의뢰부서에 통지하고 이행 완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2.5.2.>

⑥ 제3항에 따른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신설 2022.5.2.>

⑦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신설 2022.5.2.>

제41조(검사원) ① 의뢰부서장은 제40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의뢰부서장이 검사원을 지정하지 아니할 경우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사업의 업무담당자가 검사원이 된다. <개정 2010.9.28.> <개정 2013.3.27.> <개정 2021.1.19.> <개정 2022.5.2.>

② <삭제 2013.3.27.>

③ 검사원은 신속·정확·공정하게 검사를 행하여야 하며, 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주성을 가진다.

④ 검사원은 검사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책임자 등과 의뢰부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5.2.>

⑤ 검사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흥원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변상할 책임이 있다. 변상의 범위와 손해액에 관하여는 인사위원회 심의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2.5.2.>

⑥ 검사원은 필요한 경우에 계약상대자·계약담당자 또는 실사용자의 입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5.2.>

⑦ 제22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검사원은 결과물 검수 시 업무담당 부서에 계약상대자의 용역 수행과정에 대한 만족도 결과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필요시 제출 요청 대상에 용역 수혜자(단체)를 포함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활용될 수 있다. <신설 2021.1.19.> <개정 2022.5.2.> <개정 2023.1.13.>

1. 동 계약상대자가 추후 진흥원의 유사·동종 용역에 입찰하는 경우

해당 평가위원회에 참고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단, 제공할 수 있는 자료는 당해 연도 포함 최근 3년간 작성된 것으로 한정한다.

2. 반드시 해당 평가의 평가위원 전원의 동의를 얻은 후 제공해야 한다.

제42조(검사장소) ① 검사는 진흥원 내에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칙에 불구하고 계약서에 계약목적물의 인도장소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거나 출장 중 현지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뢰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진흥원 외부에서 검사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때에는 검사장소 변경 후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7.31.>

제43조(기술검사 등) ① 공사·물품 또는 용역의 성능·기능·품질 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검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검사 능력과 지식을 가진 개인 또는 법인에게 시험·분석·측정 등의 기술적인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2.5.2.>

②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한 검사는 의뢰부서장의 확인으로 갈음한다.

<개정 2022.5.2.>

1. 차량수리 및 비품수리
2. 출장수리 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현지구매하여 사용된 수리용 자재
3. 기타 특별히 보안유지가 필요한 물품

제44조(검사결과의 통보) ① 검사원 또는 제43조에 따라 기술검사를 한 개인 또는 법인은 그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뢰부서장에게 제출하고, 의뢰부서장은 계약상대자 등에게 검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8.> <개정 2019.7.31.> <개정 2022.5.2.>

② <삭제 2012. 10. 05.>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검수양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단, 자산등록 대상 물품은 진흥원의 「고정자산관리규칙」에 정한 바에 따른다. <신설 2013.3.27.> <개정 2022.5.2.>

1. 건당 50만원 이하의 공사, 용역
2. 단일품목이 10만원 이하인 물품의 구매. 이 경우에도 총 금액이 3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검수양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3.>

제45조(보완등의 요구) 제41조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의뢰부서장은 당해업자에 대하여 불합격 판정을 받은 계약목적물의 대체·보완 등을 요구하고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제4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10.9.28.> <개정 2019.7.31.> <개정 2022.5.2.>

제 6 장 대가의 지급 등

제46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제조·구매·용역 기타 진흥원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내용을 모두 이행하고 제40조 내지 제45조에 따라 검사를 완료한 후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9.28.> <개정 2017.5.23.> <개정 2022.5.2.>

②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전에 계약의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5.2.>

1. 계약상대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인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출자회사인 경우
3. 국제 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계약상대자는 대가(잔금)의 지급청구 시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의뢰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8.> <개정 2022.5.2.>

1. 잔금신청서(공문)
2. 계약서 사본
3. 선금사용결과서(필요시)
4. 결과보고서
5.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서류(보증보험증권 등)
6. 통장사본
7.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8.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개인 또는 사업장)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에 따른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개인 또는 사업장). 다만, 건강보험료·연금 보험료 완납을 증명하는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제3항 각 호의 서류 중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4.10.6.> <개정 2022.5.2.>

1. 계약금액 1천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
2.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의 계약으로서 계약 체결 시 유효기간 1개월 이상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3. 제31조 제1항 3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4. 납세자가 계약대금 전액 또는 일부를 체납세액으로 납부하고자 함을 증명할 경우

⑤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2.5.2.>

⑥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2.5.2.>

⑦ 제6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에는 제40조 내지 제45조에 따라 검사를 완료하는 날 이전까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대가지급 청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대가를 확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2.5.2.>

⑧ 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 기간은 제1항 또는 제6항의 지급 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5.2.>

⑨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다. <신설 2022.5.2.>

제47조(선금의 지급)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운임, 용선료, 공사·제조·용역계약 등의 대가로서 그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22.5.2.>

1.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기계·도서·표본 또는 실험용 재료의 대가
2. 정기간행물의 대가
3. 토지 또는 건물의 임대료와 용선료
4. 운임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지급하는 경비
6. 외국에서 연구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경비
7. 업무 등의 위탁에 필요한 경비
8. 진흥원이 매수하거나 수용하는 토지 또는 그 토지상에 있는 물건의 대금·보상금 또는 이전료
9.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제조와 계약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② 계약상대자는 선금 지급청구 시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의뢰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22.5.2.>

1. 선금신청서(공문)
2. 계약서 사본
3. 선금사용계획서
4. 선금보증금 또는 보험증권
5. 통장사본
6.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③ 제1항제9호에 따른 경비를 미리 지급할 때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지급이 불가능하여 그 사유를 계약상대자에게 문서로써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부개정 2022.5.2.>

④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급

받고자 하는 선금의 전액에 대하여 제17조제2항에 명시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지급을 약속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22.5.2.>

⑤ 선금의 사용계획과 다르게 선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금사용 계획변경에 대하여 사전 협의 및 진흥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전부개정 2022.5.2.>

⑥ 선금의 지급 후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지급받은 선금을 반환청구 하여 지급한 선금의 전액을 반환 받아야 한다. <전부개정 2022.5.2.>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의 지급조건을 위배하는 경우
3.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한 경우

⑦ 제4항에 따라 채권확보조치를 하는 경우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상(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는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22.5.2.>

제48조(중도금 등의 지급) <삭제 2022.5.2.>

제49조(국가계약관련 법령 등의 준용) <삭제 2022.5.2.>

제 7 장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50조(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의 내용 및 기타 사항의 심사평가를 위하여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내외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계약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평가위원에서 제척된다. 또한, 성희롱·성폭력 행위 등으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평가위원에서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평가위원회는 공모 관련 신청서 및 서류의 심의내용을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평가위원의 호선으로 선임하며,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하고, 종합평가의견을 작성한다.

④ 평가위원은 평가위원 Pool에 등록된 자 중에서 선발한다. 다만 평가의 특성 및 평가위원 Pool 부족 등의 사유로 평가위원 Pool에서 선발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51조에서 정한 전문가를 원장에게 보고 후 해당 평가에 한해 일시적으로 평가위원 Pool에 포함시킬 수 있다. 또한 해당평가위원을 심사평가위원검증위원회 의결을 거쳐 평가위원 Pool에 사후 등록할 수 있다. 평가위원 pool 등록·배제는 별도로 구성된 심사평가위원검증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⑤ 평가위원의 세부 구성 및 선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위원의 세부구성은 평가담당부서에서 추출하는 위원 중에서 총 7인 내외(최소 5인 이상)로 구성한다. 다만, 예산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해당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평가위원을 포함시켜야 한다.
2. 제2호 인원을 추출 순위에 따라 참석가능자 순으로 평가위원을 위촉한다.

⑥ 위원회의 진행을 보조하고 제반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의뢰부서의 내부인원 1인을 간사로 둔다. 간사는 위원회 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녹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5.2.]

제51조(전문가 자격) 전문가 자격은 「콘텐츠지원사업평가및심의지침」 제 4조(전문가 자격)를 준용한다. <개정 2023.1.13.>

[본조신설 2022.5.2.]

제52조(평가위원의 참여제한) ① 원장은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다음 각 호의

평가위원은 위원구성 및 해당평가에서 제외한다.

1. 해당평가 대상기관에 소속된 자
 2. 허위경력·불공정평가·비위사실이 확인된 자
 3. 기타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
 4. 심사평가위원검증위원회에서 참여제한으로 의결된 자
 5. 심사평가위원검증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 제4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 ② 평가위원 위촉단계에서 전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위원이 처음부터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③ 당해년도 평가위원으로 활동한 자는 평가한 동일계약에 자문·사업 수행 등 어떠한 형태로도 참여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2.5.2.]

제53조(평가위원 관리) ① <삭제 2023.1.13.>

- ② 평가위원검증위원회는 심의결과에 따라 평가위원 참여배제를 결정할 수 있다.
- ③ 평가위원의 허위경력·불공정평가·비위사실에 대한 제보 및 신고는 내·외부 누구나 할 수 있다. 평가담당부서에서는 제보·신고를 받은 즉시 해당자를 평가위원 Pool에서 추출 유예 조치하고, 제보 및 신고 의혹이 해소된 자에 한해 추출 유예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평가담당부서는 해당자에 대해 감사실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심사평가위원검증위원회에 평가위원 Pool에서의 배제를 제청할 수 있다.
- ④ 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위원의 실명을 공개할 수 있다.

제54조(공정평가 담당관) [본조신설 2022.5.2.] [조항삭제 2023.1.13.]

제55조(평가방법) ①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평가항목과 정성적 평가항목으로 나누어 평가할 수 있다.

- ②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보완 요구한 서류가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5.2.]

제56조(평가실시 및 종료) ① 제안서 평가는 서면,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가 제안서를 평가함에 있어 화상평가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안서평가 종료 후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평가위원 명단과 위원별·항목별 평가점수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제안서 평가결과에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평가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5.2.]

제57조(평가수당 지급) 원장은 평가위원에게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5.2.]

제58조(비밀의 유지) ① 제안서 평가에 참여한 자는 평가 중에 지득한 기술이나 사업상 기밀에 속하는 사항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안서 평가에 참여한 자는 진흥원으로부터 평가결과에 대한 공표가 있기 이전에 그 결과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본조신설 2022.5.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9.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3.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7.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대상) <조항삭제 2019.7.31.>

부 칙(2013.6.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0.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0.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4.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1.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3.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5.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6.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8.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8.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7.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8.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5.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1.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4.2.13.>

입찰 참가 신청서			처리기간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즉 시
입찰자	상호또는법인명	*사업자등록증 상호명과 동일하게 작성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e-mail
	주소		
입찰개요	입찰공고번호		
	입찰건명		
입찰보증금	납부	· 보증금율 : 5/100%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 사유 : 전자입찰서 제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함.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비체결시 귀 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소속/직위 : 연락처 :	사용인감	본 입찰 및 계약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 인감 (인)
<p>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원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원의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p> <p>* 별첨서류 : 입찰공고에 정한 서류</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입찰자 : 대표자 또는 법인 (법인인감)</p> <p style="text-align: center;">한국콘텐츠진흥원장 귀하</p>			

계약 심의 신청서

1. 사업명	
2. 사업개요	
3. 계약건명	
4. 배정예산	
5. 담당자	
6. 관련근거	
7. 신청사유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양식)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input type="checkbox"/> 동의 / <input type="checkbox"/> 거부	
			<input type="checkbox"/> 동의 / <input type="checkbox"/> 거부	
			<input type="checkbox"/> 동의 / <input type="checkbox"/> 거부	
			<input type="checkbox"/> 동의 / <input type="checkbox"/> 거부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전원 다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의 “○○○○○○○○○○” 위탁용역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진흥원이 수행하는 “○○○○○○○○○○○○○○○○○○” 위탁용역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9호 서식)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은행/계좌번호, 휴대폰번호 등.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직장주소, 상호, 성명, 사업자번호, 은행/계좌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10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XX년 월 일

한국콘텐츠진흥원장 귀하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양식)			
소속기관	성명	동의여부	서명
		<input type="checkbox"/> 동의 / <input type="checkbox"/> 거부	
<p>본인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의 “0000 0000”의 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활용에 동의합니다.</p> <p>가. 활용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흥원이 수행하는 “0000 0000” 계약서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p>나. 활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등 <p>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계약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10년) <p>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한국콘텐츠진흥원장 귀하</p>			

평가(심의)수당 지급 기준

1. 평가(심의)와 관련하여 평가(심의)업무를 수행한 위원 및 평가에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평가장에 참석한 위원에게 다음의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2. 평가(심의)위원에게 교통비를 지급하여야 할 경우 우리원의 여비지급기준에 따라 직원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3. 해외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제반경비 등을 고려하여 실소요액 기준으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4. 1일 초과, 합숙, 재택 등 통상적이지 않은 형태의 평가진행의 경우 원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위 : 원)

구분	지급금액	비고
평가(심의)수당	(100,000원/1시간) (최대 600,000원/ 1일 6시간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외 : 실소요액· 평가위원장 : 한도 (1일 최대 600,000원) 외 100,000원의 초과수당 지급· 미참여 평가위원 : 최소 100,000원 이상 예정액 한도 내에서 실참여시간을 기준으로 지급

- ※ 나주 본원 평가의 경우, 이동거리와 교통비 지출에 대한 부담보전을 감안하여 조정지급
- 기본 120분 기준으로 40만원, 교통비 추가수당 10만원(광주, 호남권은 5만원)
 - 1일 상한액 60만원 한도 내(2시간 초과 시 30분당 5만원 한도 내 추가지급)